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9.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차량진·출입로 사용에 따른 점용료 부과요율을 사용빈도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하고, 노점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유사한 가로판매대 점용료 산정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로관리업무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차량 진·출입로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행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의 일률부과에서 자동차관련시설 여부 및 부설주차장 면수 등을 기준으로 적용요율을 차등화 함(안 별표1의 제4호)
(현행)

- 차량 진·출입로 -----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개정안)

-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면수가 10면 이상인 진·출입로 -----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 위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 진·출입로 ----- 토지가격에 0.020를 곱한 금액

나. 버스카드판매대를 가로판매대로 통합관리하고 있으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문구(버스카드판매대)를 삭제함(안 제2조)

(현행)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안)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회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다. 생활정보지회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통합배포대를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시킴(안 별표1의 제7호)

- 생활정보지배포대가 도로상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현실성 있는 도시미관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효율적인 도로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라. 노점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유사한 가로판매대 점용료 산정 기준에 맞게 조정함(안 별표1의 제7호)

- 노점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1년에 점용면적 1m²당 토지 가격에 0.02(종전 0.05)을 곱한 금액으로 함

○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 등으로 정리하여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함.

3. 개정근거

○ 「도로법 시행령」 제4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2008.9.30조례 제4672호(개정)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2008. 12. 11. ~ 2008. 12. 31)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 규칙심의회 심의 · 의결(2009. 1. 6)

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고, “동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영 제24조제5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8조제5항 제9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 “버스카드판매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생활정보지 통합 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회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영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8조에 따라”로 하고,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4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별표1에 의하여”를 “별표1에 따라”로 하고, “조정산식에 의하여”를 “조정산식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부령”을 “「도로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을 “제2호에 해당되는”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을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해당하는”을 “해당되는”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제8호에서 규정한”을 “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4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4조에 따라”로, 같은 조 제3항 중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56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의2 중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8조에 따라”로 하고, “부령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여”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여”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

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1의 제4호 중 “진·출입로”를 다시 “자동차관련시설(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등)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및 “위에 해당되지 않는 진·출입로”로 구분하고 점용료를 각각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및 “토지가격에 0.02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1의 제7호 중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버스카드판매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하고,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로,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를 다시 “노점·생활정보지통합咍포대” 및 “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로 구분하고, 점용료를 각각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및 “토지 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38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p> <p>②~⑤ (생략)</p>	<p>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 - ----- 영 제28조에 따라 ----- ----- ----- ----- ----- 법 제94조에 따라 ----- ----- ②~⑤ (현행과 같음)</p>
<p>제5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로 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p>	<p>제5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라 ----- ----- ----- 제56조제2항에 따라 ----- ----- ----- ----- -----.</p>
<p>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1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는 영 별표3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p>	<p>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 ----- ----- 별표1에 따라 ----- ----- ----- ----- ----- ----- 조정산식에 따라 ----- -----.</p>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 (생략)</p> <p>1.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u>부령</u> 제20조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p> <p>2. (생략)</p> <p>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 전기통신시설 · 송유관시설 · 가스공급시설 · 열수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u>부령</u>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p> <p>4. (생략)</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u>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p> <p>1. <u>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u> 경우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p> <p>2. <u>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u>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p> <p>3. 제1항제4호에 <u>해당하는</u> 경우에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p> <p>③ <u>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u> 별표1의 점용물의 종류란 <u>제8호에서 규정한</u> 점용물의 점용</p>	<p>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1. ----- ----- 「<u>도로법 시행규칙</u>」 ----- ----- -----</p> <p>2. (현행과 같음)</p> <p>3. ----- ----- -----</p> <p>「<u>도로법 시행규칙</u>」 -----</p> <p>4.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에 따른</u> ----- -----</p> <p>1. ----- <u>제2호에 해당되는</u> ----- -----</p> <p>2. <u>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u> ----- -----</p> <p>3. ----- <u>해당되는</u> ----- ----- ----- ----- -----</p> <p>③ ----- -----</p> <p><u>제8호에 따른</u> -----</p>

현 행	개 정 안
<p>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1. ~ 3. (생략)</p> <p>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p> <p>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u>법 제4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u>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p> <p>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u>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u>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p> <p>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u>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u>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p>	<p>----- -----.</p> <p>1.~3. (현행과 같음)</p> <p>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p> <p>① ----- ----- ----- <u>법 제42조제3호에 따라</u> -----.</p> <p>② ----- ----- ----- <u>법 제84조에 따라</u> ----- ----- ----- -----.</p> <p>③ ----- ----- ----- ----- <u>제56조의2에 따른</u> ----- -----.</p>
<p>제9조의2(과태료의 부과·징수) 구청장은 <u>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u>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2와 같다.</p>	<p>제9조의2(과태료의 부과·징수) ----- ----- <u>법 제101조에 따른</u> ----- ----- -----.</p>

현 행			개 정 안		
[별표1]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취용률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원)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 전주광주 전화등 자상시설물	전주가로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개	1년	1,850	
	지정체전용기자함, 무선전화기자함,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 대전화기자국, 교통량감지기, 주차측 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계설 용구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7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4,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마설 물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 면적 1m ²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외경 0.1미터이하			1,150	
	외경 0.1미터초과 0.2미터이하			2,400	
	외경 0.2미터초과 0.4미터이하			4,850	
	외경 0.4미터초과 0.6미터이하			7,250	
	외경 0.6미터초과 0.8미터이하			9,650	
	작립구(맨홀), 선박구, 봉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100	
	외경 1.0미터초과 2.0미터이하			18,100	
	외경 2.0미터초과 3.0미터이하			30,150	
	외경 3.0미터초과			42,250	
자동차장치 (어스챙기),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외경 0.1미터초과 0.2미터이하	점용 면적 1m ²	1년	1,800	
	외경 0.2미터초과 0.4미터이하			3,600	
	외경 0.4미터초과 0.6미터이하			7,200	
	외경 0.6미터초과 0.8미터이하			10,850	
	외경 0.8미터초과 1.0미터이하			14,400	

현 행				개 정 안									
점용률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단위 : 원)	점용률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단위 : 원)		
2. 수도관 천연가스 등 지하 매설물		외경 1.0미터초과 2.0미터이하 외경 2.0미터초과 3.0미터이하 외경 3.0미터초과	길이 1m	1년	27,100	2. 수도관 천연가스 등 지하 매설물		외경 1.0미터초과 2.0미터이하 외경 2.0미터초과 3.0미터이하 외경 3.0미터초과	길이 1m	1년	27,100		
					45,200						45,200		
					63,250						63,250		
3. 광고판·광고판·간판 간판(는글자판을 포함한다) ·한수막·사설판·내 표지·이지·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광고판·간판 (등출간판을 제외한 다)	일시 설치한 것 (1월마다 적용) 기타	표시면적 1m ²	1일	400	3. 광고판·광고판·간판 간판(는글자판을 포함한다) ·한수막·사설판·내 표지·이지·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광고판·간판 (등출간판을 제외한 다)	일시 설치한 것 (1월마다 적용) 기타	표시면적 1m ²	1일	400		
				1년	122,000					1년	122,000		
	등출간판		표시면적 1m ²	1년	58,400		등출간판		표시면적 1m ²	1년	58,400		
							사설안내표지			1년	101,650		
							한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을 포함한다)		표시면적 1m ²	1일	400		
	한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을 포함한다)		표시면적 1m ²	1일	400		도로횡단			1년	244,000		
				1년	244,000		기타			1년	122,000		
							기타						
4. 주유소 주차장·여객 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화물 적재장휴게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m ²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 주차장·여객 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화물 적재장휴게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1층인 건축물	3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m ²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도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도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도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m ²	1년	도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도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도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이상인 건축물		점용면적 1m ²	1년	도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도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도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전·출입로					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전용면적 1m ²		1년	토지가격에 0.020를 곱한 금액			
	기 타						기 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간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m ²	1년	도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도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도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상동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간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m ²	1년	도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상동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m ²	1년	도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도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도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m ²	1년	도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m ²	1년	도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도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도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현 행			개 정 안				
점용률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원)				
점용 단위	기간 단위		점용 단위	기간 단위	점용료 (단위: 원)		
6. 지하상 가지하상 봉로 그 방에 이와 유사한 것	3층이상인 건축물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점용 면적 1m ²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6. 지하상 가지하상 봉로 그 방에 이와 유사한 것	3층이상인 건축물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 하는 통로	점용 면적 1m ²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바스카드판매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노점자동차기 상품진열대	점용 면적 1년 1m ²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7. 노점자동차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 생활정보자동화 체포대 자동차기 상품진열대	점용 면적 1년 1m ²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관자벽안관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세고금착부분 기타	기 타	일시 점용한 것 점용 면적 1m ²	400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관자벽안관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세고금착부분 기타	일시 점용한 것 점용 면적 1m ²	400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밀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 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 면적 1년 1m ²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밀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 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 면적 1년 1m ²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차량시설, 비거리기사설 (시장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급복성 체제시장증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시설물)		점용 면적 1년 1m ²	토지가격에 0.0001를 곱한 금액	10. 차량시설, 비거리기사설 (시장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지정공고 한 급복성 체제시장증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시설 물)	점용 면적 1년 1m ²	토지가격에 0.0001를 곱한 금액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위탁판매 주택 기 타	점용 면적 1년 1m ²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주택 기 타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위탁판매 주택 기 타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참고

1. ~ 8. (생략)

* 참고

1. ~ 8. (현행과 같음)